
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7-82호

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“가축·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”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28일

농림축산식품부 장관

1. 목적 :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
2. 지역 : 인천, 세종, 경기, 충남
3. 대상 :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·축산관련 종사자·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, 차량, 물품 등 이동 금지
 - 가. 축산농장 : 닭, 오리 등 가금류 농장
 - 나. 축산관련 종사자 : 임상수의사, 수집상, 중개상, 가축분뇨 기사, 동물약품·사료·축산기자재 판매자, 농장관리자, 가축운송기사, 사료운반기사,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
 - 다. 축산관련 작업장 : 가금류 도축장, 사료공장, 사료하치장, 사료대리점, 분뇨처리장, 공동퇴비장, 가축분뇨공공처리장, 공동자원화시설, 축산 관련 운반업체, 축산관련용역업체,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, 축산 컨설팅업체, 퇴비제조업체, 종계장,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
4. 기간 : 2017.2.28. 24시부터 2017.3.2. 12시까지(36시간)

5. 기타사항

- 가.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·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
- 나.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·차량·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
- 다.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·차량·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
- 라.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

6. 문의처 :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(전화 044-201-2672, 2674~5, 2677)

일시 이동중지(Standstill) 운영계획

- '17.2.28(화) 24시~31(목) 12시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가금농장 등

2017. 2. 28



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

농림축산식품부

방역관리과

목 차

I. 운영 개요	1
II. 준수사항 및 방역조치	3
III. 이동승인 운영요령	4
IV. 이행사항 점검계획	5
V. 향후 추진계획	6
참고 1. 중앙 합동점검반 구성현황	7
2. 주체별 방역조치 대응요령	8
3. 농가 방역수칙	17
4. 이동승인 신청서	18
5. 일시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등명서	19
6.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	20
7. 점검표 및 확인서	21
8.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결과 집계표	26

I. 운영 개요

1. 목 적

- 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 명확화
- ☐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·축산관련 시설별 방역준수사항 시행 및 점검을 통해 차단방역 효과 증대
- 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현장 방역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등 강력한 대응

2. 적용기간 : '17.2.28일 24시 ~ 3.2일 12시(36시간)

- ※ 이동중지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,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, 필요시 1회 48시간의 범위 내 연장 가능

3. 적용지역 : 인천, 세종, 경기, 충남

4. 적용대상 : 축산농가, 도축장, 출입차량 등 약 29천개소

* 축산농가 16천여개소, 도축장 17개소, 사료공장 148개소, 차량 13천여대 등

○ 축산농장의 가축·축산관련 종사자·차량

○ 축산 관련 작업장의 축산 관련 종사자, 차량, 물품 등

* 축산농장 : 닭, 오리, 메추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

* 축산관련 종사자 : 임상수의사, 수집상, 중개상, 가축분뇨 기사, 동물약품·사료·축산기자재 판매자, 농장관리자, 가축운송기사, 사료운반기사,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

* 축산관련 작업장 : 도축장, 사료공장, 사료하치장, 사료대리점, 분뇨처리장, 공동 퇴비장, 가축분뇨공공처리장, 공동자원화시설, 축산 관련운반업체, 축산관련 용역업체,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, 축산 컨설팅업체, 퇴비제조업체, 종축장,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

5. 전파 방법

- 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, 지자체,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등을 통해 발표(2.28일)
- ☐ 검역본부는 KAHIS에 등록되어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등을 통해 전파(2.28일)
- ☐ 시·도(시·군)는 관내 모든 축산농가·축산관련 종사자(업체)에게 SMS,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 전파, 공고문 게재*(2.28일)
 - *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3(일시 이동중지 명령)제4항에 따라 조치
- ☐ 농협·축종별 단체·협회는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 전파
 - * 특히, 도축·사료·동물약품·가축분뇨·기자재 등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는 소속직원 및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즉시 통보

< 기관별 전파대상 >

기관명	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전파대상 및 방법
농림축산식품부	관계부처, 지자체,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보도 등
검역본부	KAHIS에 등록된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
시·도지사 (시·도 방역기관) 및 시장·군수	관내 축산농가·축산관련 종사자(업체)에 SMS 및 마을방송 등 닭,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(업체)는 사전에 기초정보(이름, 핸드폰 등)를 확보
농협·단체·협회	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사항 전파 : 농협중앙회(회원조합), 대한수의사회, 대한양계협회, 한국육계협회, 한국토종닭협회, 한국오리협회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, 한국동물약품협회, 한국사료협회, 한국육가공협회,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,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

II. 준수사항 및 방역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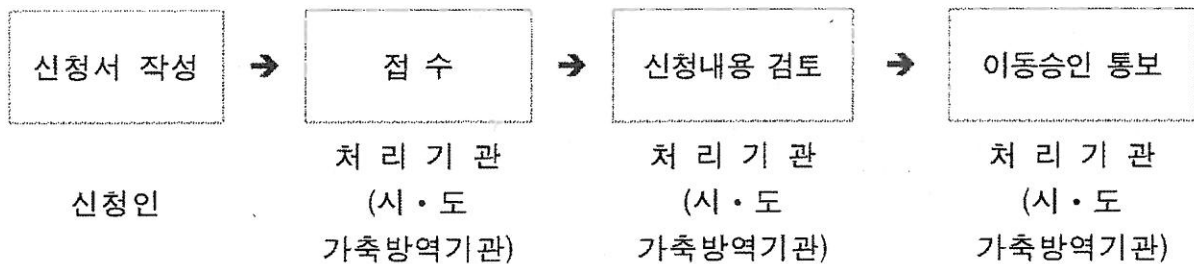
- **축산농가** :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**운행을 중지한 후**, 차량 내·외부 세척·소독 및 농장 내·외부 소독
 - 주변지역, 도로에 대해서도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소독 실시
 -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**운행을 중지한 후**, 차량 내·외부 세척·소독 후 **운행을 중지하고** 농장 내·외부 소독
 - 축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
 - 농가 내 구서, 쥐구멍 차단 등 외부 발생요인 유입 예방 철저
- **축산관련 종사자** :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**운행을 중지한 후** 차량 내·외부 세척·소독 실시
- **축산관련 차량** : 차량 GPS부착 및 **항시 전원 ON 유지**
 - 축산차량 외부의 바퀴, 흙받이 및 차량 내부의 운전핸들, 발 매트 중점 세척·소독하고, 차량 전체 내외부를 세척·소독 조치
 - 축산차량은 전국 모든 가금류 농장 및 축산시설 출입이 금지되므로 **운행을 중지**, 소속 공장(회사)으로 이동하여 세척·소독
- **축산관련 작업장** :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, 차량 내·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 철저한 소독
- **농협** : 공동방제단 동원하여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소독, 생석회 방역물품 지원,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소독(철새도래지 직접 소독 금지)
- **지자체** :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강화, 차량 GPS 부착 및 적정 운영 여부 등 집중단속, 고발조치

Ⅲ. 이동승인 운영요령

1. 이동승인 신청

□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**부득이 하게 이동**을 해야 하는 경우,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 제출

* 이동중지 적용 시·군·구에서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을 대신해 신청서 접수 가능



※ 시·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이동승인시 ①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,
②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는 요건 확인

2. 이동승인서

□ 이동승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대상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서 발급

3. 이동중지 예외 대상의 처리

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동중지 명령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예외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신청인이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며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승인

□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서를 발급

IV. 이행상황 점검계획

1. 점검 개요

- ☐ 배 경 : 가금류 등에 대한 「일시 이동중지 명령」
 - ☐ 점검기간 : '17.2.28(화) 24:00 ~ 3.2(목) 12:00(36시간)
 - ☐ 점 검 반 : 7개반 14명(점역본부 7명, 방역본부 7명)
 - ☐ 점검대상 : 충청남도(7개 시·군)
- 가금류 농가, 축산관련 종사자 및 작업장, 철새도래지 등

2. 점검 내용

- ☐ 「일시이동중지 명령」에 따른 지자체 등의 이행실태* 전반
 - * 지자체의 이동중지 이행여부 점검반 실질운영 여부 등
- ☐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*
 - *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의 주요도로 설치 운영, 축산차량 통제, 운영인력 적정,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등 거점소독소 운영 실적 등
- ☐ 농가별 방역조치 이행사항 준수, 철새도래지 적정 관리 여부
- ☐ 시설물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,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
- ☐ 축산관련 차량 중 GPS 부착 및 적정 운영 여부
- ☐ 철새도래지에 대한 차단방역 이행여부 등

3. 협조 사항

- ☐ (AI예방통제센터)점검반 편성(2.28), 점검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(3.3)

V. 향후 추진계획

□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: '17.2.28일 24시

□ 중앙 점검반 현장 점검(3.1~3.2일)

○ 시·군·구별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 확인 및 지도

□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방역대책본부 또는 상황실 비상체제 유지(2.29~)

○ 시행 전, 각 지자체 및 기관, 협회(단체)별 이행 준비 상황 확인 및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 안내

□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결과보고(3.3)

○ 지자체, 농협, 협회 등 이행실적*을 AI예방통제센터로 제출(3.2)

* 농가, 기관 또는 단체별 주요 조치사항, 중앙 점검반 추진상황 등

참고 1 중앙 합동 점검반 구성현황

□ 점검지역 : 7시군, 점검반 7반 14명

시도	시군	검역본부			방역본부		
		직급(직위)	성명	휴대폰	직급(직위)	성명	휴대폰
충남	서산						
	예산						
	홍성						
	청양						
	공주						
	보령						
	부여						

* 공란은 추후 검역본부 A에방통제센터에서 편성할 예정임

참고 2

주체별 방역조치 대응요령

주체별	주체별 역할
축산농장 전통시장	□ 축산농장이라 함은 닭, 오리, 메추리 등 가금을 사육하는 농장이며, 가금사육장에서 닭, 오리 등 가금을 사육하는 가든형 식당을 포함한다. □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닭, 오리 등을 계류하여 판매하는 가금 판매소에 해당한다. ①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, 차량의 내·외부를 철저히 세척·소독하며 농장의 내·외부 또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. ②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(All-Out) 일제히 세척 및 소독하고, 소유 계류장, 가금운송차량에 대하여도 세척 및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. ③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 하게 이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이동중지 대상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참고 4 : 이동승인 신청서) < 신청 흐름도 > <pre> graph LR A[신청서 작성 신청인] --> B[접수 처리기관 (시·도 가축방역기관)] B --> C[신청내용 검토 처리기관 (시·도 가축방역기관)] C --> D[이동승인 통보 처리기관 (시·도 가축방역기관)] </pre> * 이동중지 적용 시·군·구에서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을 대신해 신청서 접수 가능

축산관련 종사자	□ 축산관련 종사자라 함은 임상수의사, 수집상, 중개상, 가축분뇨 기사, 동물약품·사료·축산기자재 판매자, 농장관리자, 가축운송기사, 사료운반기사,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. ① 축산관련 종사자는 소유 차량을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·외부를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. ②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닭, 오리 등의 가금을 공급하는 가금유통차량의 경우 일시 이동중지 발령 전 가까운 거점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도록 한다.
축산관련 작업장	□ 축산관련 작업장이라 함은 가금류 도축장, 사료공장, 사료하치장, 사료대리점, 분뇨처리장, 공동퇴비장, 가축분뇨공공처리장, 공동자원화시설, 축산 관련운반업체, 축산관련용역업체,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, 축산 컨설팅업체, 퇴비제조업체, 종계장,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을 포함한다. ① 축산관련 작업장에서 이용하는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고, 차량의 내·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작업장 전체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. ② 분뇨차량, 가금중간유통(계류 등)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한다. < 예 시 > ① 생축 운반차량은 명령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·외부 세척·소독 실시 ② 사료운반 차량은 명령 발령 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·외부 세척·소독 실시

농림축산
식품부

□ 관계 기관별(국민안전처, 지방자치단체(시·도), 경찰청, 국방부 등) 행동요령을 총괄 지휘한다.

- ① 전국 이동중지명령 발동 후 동 명령기간 동안 이행점검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.
- ②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AI 방역상황실 비상체제를 24시간 운영 및 대응에 따른 각종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한다.
- ③ 명령 발동 이전 지자체 및 기관, 협회(단체)별 이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을 안내한다.
- ④ 명령 발동 이전, 각 시·도(농정국장 참여)하여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 한다.
- ⑤ 전국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.

※ (기간) '17.2.28일, 24시부터 '17.3.2일 12시까지(36시간)

※ (대상) 가금류 축산농장의 가축, 축산관련 종사자, 차량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, 차량, 물품

< 명령 발동 기준 >

- ① 이동 중지 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동중지 기간 중 이동중지 대상인 축산농장(가금류 농장) 및 축산 관련 시설(차량 포함)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, 역학 관련 농장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 활동과 지방자치 단체의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조류인플루엔자(AI)에 대한 방역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동 중지를 해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- ⑥ 중앙 합동점검반 편성 및 운영을 계획하고, 일시 이동중지 이행 사항실태에 대해 점검한다.

농림축산 검역본부	□ 중앙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각 시·군·구의 주요도로 및 축산 관계시설(도축장, 퇴비공장 등)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. ① 중앙 합동점검반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(산하)기관의 인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, 가축방역관은 반별로 1명씩 포함토록 한다. ② 농림축산검역본부(가축질병상황실)는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가 KAHIS(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)의 차량 GPS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검색 권한을 사전에 부여한다. ※ 또한, 시·도가 가축전염병의 확산 예방 및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차량 정보 열람이 가능함을 지도·교육 ③ 지자체의 점검과는 별도로 가금관련 축산시설, 축산 농가에 대한 차량 출입여부를 지역별, 시간대별로 점검하여 지자체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한다. ※ 동 명령발동기간 중 축산관계시설, 주요 농가 등을 기준으로 KAHIS를 통해 차량출입내역을 조회한다. ④ GPS 차량 및 이동중지 명령 대상자에 대해 이동중지 발령 전과 발령 후의 행동요령 등에 대해 사전에 SMS(문자), SNS 등을 이용 하여 홍보한다. 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이동중지 명령 발동 기간 중 24시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.
----------------------	--

명령발령 적용 지자체	□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금, 차량 등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(상황별로) 농식품부에 보고한다. ※ 거점소독시설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·군·구에 한하여 설치 및 운영 ① 명령 발동 이전, 지자체(시·도)는 농정국장 주재 하에 관할 시·군·구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한다. ① 지자체(시·도)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농가, 축산관계 시설(도축장, 사료공장, 분뇨처리시설 등),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. < 점검 방법 > ① 주요도로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여부, ②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에 관련 차량의 이동중지·출입통제 여부, ③ 가금류·축산관련 물품·차량·종사자의 농장 이동중지·출입통제 여부, ④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정보를 통한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을 할 경우 붙임 7의 이동중지 이행점검표(이하 “이행점검표”라 한다)를 참고하여 점검할 수 있다. 점검 결과,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조항에 따라 조치 ② KAHIS(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)의 축산차량 GPS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차량이 축산시설에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,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 조치토록 한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③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결과,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.

※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(벌칙)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가능

④ 지자체(시·군)은 중앙합동점검반에서 동 명령 위반자에 대한 통보 즉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 등 조치토록 한다.

⑤ 지자체(시·도)는 관할지역의 국방부 및 경찰청에 동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등에 대해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반 등을 구성한다.

※ 관할 지역의 경찰 및 군인 인력 동원 등 원활한 협조를 위해 국민안전처 등에 필요시 협조를 구한다.

⑥ 지자체(시·도)는 이동중지 명령 발동 기간 중 24시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.

⑦ 지자체는 중앙 합동점검반 요청 시 각 관할 소재의 축산관계 시설, 축산농장, 거점소독시설(이동통제시설)의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

⑧ 지자체는 점검반 요청 시 단속된 축산차량의 축산차량등록 및 GPS 설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

⑨ 동 명령 발령기간 동안 거점소독시설, 이동통제시설 근무자의 근무태세를 재정비하고, 방역복·비닐장화 등 방역물품에 대해 재확인 한다.

⑩ 지자체는 각 거점소독시설 설치된 소독기 분사상태, 방역 차량 등에 대해 재정비한다.

명령발령
적용
시·도
가축방역
기관

□ 시·도가축방역기관(동물위생시험소 등)은 이동중지 예외 대상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처리한다.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동중지 명령 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예외대상으로 참고 6과 같이 정해진 경우에 신청인이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청 후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이를 승인한다.

②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대상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 중지 대상제외 승인서(참고 5)를 발급 받을 수 있다.

< 예외 규정 >

①사료의 보관·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②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③해당 지역의 AI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 (1)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, 생활용품,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 (2)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④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,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(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) ⑤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(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) ⑥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(가금육가공장, 동물약품제조업체) ⑦도축장 종사자(품질평가사, 도축검사관 포함)로서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⑧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(농식품부 협의 필요)

경찰청	□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에 인력을 지원하고 축산차량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단속한다. ①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가 관할지역의 경찰청에 사전 협조 요청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적극 협조한다. ② 이동중지 이행여부 단속은 '지방자치단체'의 점검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.
국방부	□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에 인력을 지원한다. ○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가 관할지역의 국방부에 사전 협조를 요청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적극 협조한다.
농협 중앙회	□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이전 및 발동기간 중 축산농가 등에 대해 소독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한다. ① 공동방제단, 축협 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(소규모 및 기타 가금 농가 등)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. ② 소속 회원, 및 축산농가, 축산관련시설(사료회사, 분뇨 처리 업체 등)에 동 실시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. ③ 농협중앙회는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AI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. ④ 농협중앙회는 축산관계차량 등의 이동명령 위반에 대해 발견 시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(중앙기동점검반) 또는 관할 지자체(시·군)에 신고한다. ☎ 신고(GPS 관련 문의) 전화 : 검역본부(가축질병상황실) 또는 관할 지자체(축산부서)

관련협회	□ 소속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. ※ 관련 협회 : 양계협회, 육계협회, 토종닭협회, 오리협회 ① 소속 회원농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, 명령발동기간 이행여부를 확인 한다. (1)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, 소유 차량(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) 및 농가에 대한 세척·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. (2) 토종닭협회는 오리협회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의 가금(닭, 오리 등)을 전부 비우고(All-Out) 일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. ② 각 협회는 농가 대상 홍보실적(SMS 등)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AI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.
계열화사업자	□ 소속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. ※ 대상 계열화사업자 : 전국 닭, 오리 계열화사업자 ① 소속 농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, 명령발동기간 중 이행여부를 확인 한다. (1)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, 소유 차량(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) 및 농장에 대한 세척·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. (2) 특히, 계열 소속 농가가 명령 위반(예외 승인서 발급 제외) 시 해당 계열사 방역프로그램 평가 등에 반영한다.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	□ 전화예찰요원을 동원해 명령발동기간 중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 및 소독조치 사항에 대해 홍보한다.

참고 3 농가 방역수칙

①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(☎ 1588-4060, 1588-9060)에 신고

②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

-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,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
- 축사에 그물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

③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

- 닭·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
 -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
- 닭·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
 -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
- 동물약품 운반차량·관계자 농장출입 금지, 농장주가 직접 구입·운반
- 가축운반차량(어리장차)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, 소독 철저
-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, 닭·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

④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

- 농장 출입구에 「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」는 안내문 부착
-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,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

참고 4 이동승인 신청서

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2서식]

이동승인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한	촉서
구분	[] 역학관련 이동제한		[] 일시 이동중지	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(전화 :)		
신청사항	이동사유			
	이동 기간	년 월 일	시부터	년 월 일 시까지
	방문장소(경유지 포함)			
	이동 방법 비고	[]차량(차량번호 :), []대중교통, []기타()		

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9조제1항·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·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

처리절차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처리기관 (시·도 가축방역기관)	→	신청내용 검토 처리기관 (시·도 가축방역기관)
			→	이동승인 통보 처리기관 (시·도 가축방역기관)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참고 5

일시 이동중지(Standstill) 대상제외 승인증명서

제 0000- 0호

1. 대상명:
2. 승인 일시:
3. 승인 사유:

상기 가축, 축산관련 종사자, 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일시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을 승인합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000 가 축 방 역 기 관 장인

참고 6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

(근거: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)

1. 사료의 보관·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
2.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
3. 해당 지역의 AI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
 - ①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, 생활용품,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
 -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
 - ②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,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
 -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
 - ③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
 -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
 - ④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
 - 가금육가공장, 동물약품제조업체
 - ⑤ 도축장 종사자(품질평가사, 도축검사관 포함)로서 축산관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
 - 다만, 도축장 운영조건 등은 농식품부 사전 협의 후, 승인
 - ⑥ 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(농식품부 협의 필요)

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농가 점검표

점검일시 : 2017. . .

성명		전화번호	
주소			계열사
축종		사육두수	

[점검사항 :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]

① 농장주 및 가족이 이동한 적이 있는지 여부

- 있음 () 없음 ()

* 있을 경우 방문한 장소의 주소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

*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물 출입여부 파악

- 기재사항 :

② 가축을 입식하거나 출하한 적이 있는지 여부

- 있음 () 없음 ()

* 있을 경우 가축을 입식한 농장 정보 및 도축장 명칭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

- 기재사항 :

③ 농장 소독 실시여부

- 있음 () 없음 ()

* 일시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여부 및 농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농장 소독여부 판단

- 기재사항 :

점검자 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
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축산관계시설 점검표

점검일시 : 2017. . .

성명		전화번호	
주소			계열사
업종		보유차량(대)	

[점검사항 :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]

① 영업자·종업원·운전자 등이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관련 시설물을 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

- 있음 () 없음 ()

* 있을 경우 방문한 장소의 주소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

- 기재사항 :

② 보유차량 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

- GPS 부착 보유차량 대수(GPS부착(대)/총보유(대)) : /

- 있음 () 없음 ()

* 있을 경우 출입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

- 기재사항 :

③ 외부인·외부차량이 출입하였는지 여부

- 있음 () 없음 ()

* 있을 경우 출입자·차량정보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

- 기재사항 :

④ 시설물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여부

- 실시 () 미실시 ()

- 기재사항 :

* 일시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여부 및 공장·차량상태 등을 확인한 후 소독여부 판단

⑤ 전통시장, 가든형 식당 등 취약지역 농가 점검

- 기재사항 :

* 방사사육,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등 점검·작성 및 KAHIS 현행화

점검자 소속: 직위: 성명: (인)

소속: 직위: 성명: (인)

도축장 일제소독 점검표

☐ 작업장 현황

- 점검일시 :
- 작업장명(축종) :
- 소재지(주소/전화) :
- 도축업 영업자 :
- 검사관 성명 :

☐ 점검사항

점 검 내 용	결 과
• 도축장 내부 세척 · 소독 실시 여부	○, ×
• 도축장 외부 세척 · 소독 실시 여부	○, ×
• 도축장 진출입 도로 및 주변지역 세척 · 소독 실시 여부	○, ×
• AI에 적합한 소독약 사용 여부	○, ×
• 소독 효과에 맞는 적정 희석배수 사용 준수 여부	○, ×
•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재 여부	○, ×

점검자 소속: 직위(급): 성명: (서명)

소속: 직위(급): 성명: (서명)

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차량 확인서

점검일시 : 2017. . .

성 명		전 화 번 호	
주 소			
업 종		차 량 번 호	

[위반사항 확인내용 기재]

☐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경찰은 축산관련 차량이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을 위반시 확인서 징구 조치

* 검역본부에서 기조사한 GPS 등록차량 중 미 운행 차량을 점검하여 적정 운영여부 확인 및 부 적정 운영 확인 시 적발

○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(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)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

○ 확인서 징구 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련 위반내용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른 처분(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)

<확인 사항>

점검자 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
참고 8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 집계표(지자체)

□ 지자체

전파 방법		시도	00 도(시)			
		일자	3.1일		3.2일	누계
		시간대				
			00:00~ 12:00	12:00 ~ 24:00	00:00~ 12:00	
마을방송(횟수)						
SMS 전송 (횟수, 1인 기준)						
이동중지/ 이동제한 명령위반 (건수)	가축					
	축산관련 종사자					
	차량					
	물품					
	기타					
축산시설 방문한 축산차량(건) (KAHIS 상 점검)						
임시 통제초소 설치개소수						
일시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(건)						
축산농가 점검(건)						
축산관계시설 점검(건)						
가축(전통)시장(건)						
가든형 식당(건)						

참고 9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

☐ 농협중앙회

전파 방법	시도	농협		
	일자	3.1일		누계
	시간대	00:00 ~ 12:00	12:00 ~ 24:00	
공동방재단 운영(명/대)				
주요도로 소독(개)				
소규모 및 기타 가금 농가(개)				

☐ 생산자단체

전파 방법	시도	00 협회		
	일자	3.1일		누계
	시간대	00:00 ~ 12:00	12:00 ~ 24:00	
소속 회원 농가(개수)				
전체 홍보(건)				
SMS/MMS 발송(건)				

☐ 검역본부(중앙점검반 점검실적)

시도	시군	농장	축산시설	도축장	전통시장	가금식당	기타				확인서 장구	비고
							시군	통제 초소	거점 초소	기타		
확인서 장구 세부내역 :												

☐ 검역본부(KAHIS 활용 홍보 현황)

전파 방법	구분	농림축산검역본부			
	일자	3.1일		3.2일	누계
	시간대	00:00 ~ 12:00	12:00 ~ 24:00	00:00 ~ 12:00	
대상(개수)					
SMS/MMS 발송(건)					
지자체 축산차량 KAHIS 조회권한 부여					